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(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「약사법」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 부터 처방전의 알선·수수·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·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